

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적절한 관리·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, 향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지속 강구하겠습니다

< 보도내용 >

- 2026.9.15.(화) 동아일보 「협동조합에 가족 허위채용, 보조금 받고 인건비 빼돌려도 몰라」 제하의 기사에서,
 - “사회적협동조합이 해마다 공개하는 결산 자료에 임직원이나 거래 상대방이 이사장의 배우자·자녀 등 친족인지 적는 항목이 없고, 이를 제한하는 규정도 없으며”
 - “지자체의 지원액은 기획처가 수상한 보조금 사용을 걸러내려고 운영하는 전산 시스템(부정징후 탐지시스템)으로도 잡아내지 못한”다고 보도하였습니다.

< 정부입장 >

- 현재 정부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96조의2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연 1회 경영공시를 의무화하고, 동법 제111조 등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.
- 또한, 사회적협동조합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에 대해서도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점검하고 있습니다.

□ 다만, 직원 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 및 특수관계인 거래 등과 관련된
현행 제도의 실태 점검을 통해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*을 검토
하도록 하겠습니다.

* (예시) 사회적협동조합 이사회 구성원의 다양성 보장, 경영공시 항목 개선 등

담당 부서	미래전략기획실 상생협력전략과	책임자 담당자	과 장 이정윤 (044-214-1750) 사무관 배준혜 (jhbae10@korea.kr)
-------	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	--

